##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609

발의연월일: 2024. 10. 7.

발 의 자:김태년 이훈기 · 황명선

손명수 · 박용갑 · 전현희

정준호 · 임호선 · 김영진

김영배 · 김한규 · 이학영

전진숙 • 이기헌 • 박홍배

김병기 의원(16인)

#### 제안이유

국민연금 개혁의 핵심 의제로서 국민연금의 노후보장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프리랜서 예술인이나 노무제공자는 노동자의 성격을 강하게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이미 「고용보험법」과 「산업재해보상법」의 적용 대상이 되었음을 고려하여 이들을 사업장가입자로 편입할 필요가 있음.

또한, 현재 시행 중인 출산 크레딧 제도는 출생률 제고와 양육 부담 경감을 위해 강화하고, 노령연금수급자 중에서 소득이 있는 경우 그 소득 수준에 따라 노령연금액을 연동하여 감액하는 제도는 근로 의욕 저하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므로 폐지하는 등 시대 흐름에 맞추어 현 행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출산크레딧 대상을 현행 '자녀가 2명 이상인 가입자'에서 '자녀가 1명 이상인 가입자'로 확대하고, 자녀 1명당 추가 산입 되는 개월수를 36개월로 하며, 출산크레딧에 따른 추가 산입 기간의 상한을 100개월로 함(안 제19조).
- 나. 예술인과 노무제공자의 사업장가입자로 당연 가입 근거를 마련함 (안 제23조의2제1항 및 제23조의3제1항 신설).
- 다.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 감액 제도를 폐지함(안 제63조의2 삭제).

법률 제 호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3호 중 "근로"를 "근로나 노무"로, "말한다"를 "말하며, 국민연금가입자가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예술인 또는 제23조의3제1항에 따른 예술인 또는 제23조의3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자인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득의 산정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말한다"를 "말하며, 가입자가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예술인 또는 제23조의3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자인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준소득월액의 산정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항제6호 중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 및 사용자로서 제8조에 따라 국민연금에 가입된"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11호 중 "사용자"를 "사용자(사업장가입자가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예술인 또는 제23조의3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자인 경우 사업주 또는 노무수령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가.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 및 사용자로서 제8조에 따라 국민연 금에 가입된 자

나. 계약의 체결로 제23조의2ㆍ제23조의3에 따라 국민연금에 가입

된 자

제11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23조의2제1항 또는 제23조의3제1항에 따라 계약의 개시가 이행된 때

제12조제1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예술인 또는 제23조의3제1항에 따른 노무 제공자의 경우 그 계약의 이행이 종료된 때

제14조제2항 중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를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제23조의2 및 제23조의3"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21조"를 "제21조·제23조의2제2항 및 제23조의3제2항"으로 한다.

제17조제2항 단서 중 "임금"을 "임금이나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예술인 또는 제23조의3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자의 대가"로 하고, 같은 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근로자에게"를 "근로자,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예술인 또는 제23조의3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자에게"로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근로자는"을 "근로자,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예술인 또는 제23조의3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자에게"로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근로자는"을 "근로자,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예술인 또는 제23조의3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자는"으로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근로자가"를 "근로자,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예술인 또는 제23조의3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자가"로, "근로자에게"를 "근로자,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예술인 또는 제23조의3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자에게"로 한다.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 이상의 자녀"를 "자녀"로 하

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50개월"을 "100개월"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2명"을 "1명"으로, "12개월"을 "36개월"로 하고, 같 은 항 제2호 중 "3명"을 "2명"으로, "둘째"를 "첫째"로, "12개월에 2자 녀"를 "36개월에 1자녀"로, "18개월"을 "36개월"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제21조"를 "제21조·제23조의2제2항 또는 제23조의3 제2항"으로 한다.

제2장의2(제23조의2부터 제23조의3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장의2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에 대한 국민연금 특례

제23조의2(예술인에 대한 특례) ① 근로자가 아니면서 「예술인 복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예술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중같은 법 제4조의4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이하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다른 사람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하 "예술인"이라 한다)으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사람과 이들을 상대방으로 하여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사업의 사업주는 제8조제1항 본문에도불구하고 해당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의 개시일에 당연히 사업장가입자가 된다. 다만, 제8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는 제외한다.

②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사업의 사업주는 예술인의 가

입자 자격의 취득, 상실 및 계약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6조에도 불구하고 18세 미만 예술인은 사업장가입자가 되는 것으로 본다. 다만, 본인이 원하지 아니하면 사업장가입자가 되지 아니할 수 있다.
-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사업장가입자가 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23조의3(노무제공자에 대한 특례) ① 근로자가 아니면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해당 사업주 또는 노무수령자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노무제공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이하 "노무제공자"라 한다)으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사람과 이들을 상대방으로 하여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사업의 또는 노무수령자(이하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라한다)는 제8조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해당 노무제공계약의 개시일에 당연히 사업장가업자가 된다. 다만, 제8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는 제외한다.
  - ②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는 노무제공자의 가입자 자격의 취득, 상실 및 계약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6조에도 불구하고 18세 미만 노무제공자는 사업장가입자가 되는 것으로 본다. 다만, 본인이 원하지 아니하면 사업장가입자가 되지 아니할 수 있다.
-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사업장가입자가 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3조의2를 삭제한다.

제90조제1항 후단 중 "제100조의3제1항"을 "제100조의3제1항·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근로자에게"를 "근로자(예술인과 노무제공자를 포함한다)에게"로 한다.

제100조의3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에"를 "제1항 및 제2 항에"로 한다.

- ② 국가는 사업장가입자인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연금보험료 중 기여금 및 부담금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의 소득을 얻을 것
- 2.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의 재산 및 「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1 호에 따른 종합소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일 것 제123조제1항 전단 중 "제100조의3제1항"을 "제100조의3제1항·제2항"

으로 한다.

제131조제1항제1호 중 "제21조제1항"을 "제21조제1항·제23조의2제2항 및 제23조의3제2항"으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예술인 및 노무제공자의 가입자 자격 취득일에 관한 적용 특례) 이 법 시행 전에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이나 노무제공계약이 개시되어 해당 계약이 끝나지 아니한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로서 제23조의2 및 제23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라 사업장가입자 자격을 취득하는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는 이 법 시행일에 가입자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제3조(출산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자녀를 얻은 사람부터 적용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정의 등) ① 이 법에서 사	제3조(정의 등) ①
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	
다.	<del>-</del>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소득"이란 일정한 기간 <u>근</u>	3
<u>로</u> 를 제공하여 얻은 수입에서	<u>근로나 노무</u>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액 또는 사	
업 및 자산을 운영하여 얻는	
수입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을 <u>말한다</u> .	말하며, 국민연금가입
	자가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예술인 또는 제23조의3제1항
	에 따른 노무제공자인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그 소득의 산정 기준을 달
	리 정할 수 있다.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5. "기준소득월액"이란 연금보	5
험료와 급여를 산정하기 위하	
여 국민연금가입자(이하 "가	
입자"라 한다)의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6. "사업장가입자"란 <u>사업장에</u>
고용된 근로자 및 사용자로서
제8조에 따라 국민연금에 가
입된 자를 말한다.

<신 설>

<신 설>

- 7. ~ 10. (생략)
- 11. "부담금"이란 사업장가입자 의 <u>사용자</u>가 부담하는 금액 을 말한다.

12. ~ 19. (생략)

- ---말하며, 가입자가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예술인 또는 제23조의3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자인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준소득월액의 산정 기준을 달리 정할수 있다.
- 6. -----<u>다음 각</u>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가.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 및 사용자로서 제8조에 따라 국민연금에 가입된 자나. 계약의 체결로 제23조의2 또는 제23조의3에 따라 국민연금에 가입된 자
- 7. ~ 10. (현행과 같음)
  - -----사용자(사업장가입자가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예술인 또는 제23조의3제1항에 따른 하다. 이하 같다)-----.
- 12. ~ 19. (현행과 같음)

- ② ~ ④ (생 략)
- 제11조(가입자 자격의 취득 시기)
  - ① 사업장가입자는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날에 그 자격을 취득한다.
  - 1. 2. (생략)

<신 설>

- ②・③ (생략)
- 제12조(가입자 자격의 상실 시기)
  - ① 사업장가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날의 다음 날에 자격을 상실한다. 다만, 제5호의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게 된 날에 자격을 상실한다.
  - 1. ~ 5. (생 략) <u><신 설></u>
  - ②·③ (생 략)
- 제14조(자격 등의 확인) ① (생략)
  - ② 가입자 자격의 취득 및 상 실은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1조(가입자 자격의 취득 시기)
①
1. • 2. (현행과 같음)
3. 제23조의2제1항 또는 제23조
의3제1항에 따라 계약의 개시
가 이행된 때
②・③ (현행과 같음)
제12조(가입자 자격의 상실 시기)
①
,
<u>.</u>
1. ~ 5. (현행과 같음)
<u>6.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예술</u>
인 또는 제23조의3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자의 경우 그
계약의 이행이 종료된 때
②·③ (현행과 같음)
제14조(자격 등의 확인) ① (현행
과 같음)
②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규정에 따른 자격의 취득 및 상실 시기에 그 효력이 생긴다. ③ 제1항에 따른 확인은 가입 자의 청구, 제21조에 따른 신고 또는 직권으로 한다.

#### ④ (생략)

- 제17조(국민연금 가입기간의 계 7 산) ① (생 략)
  - ② 가입기간을 계산할 때 연금 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기간은 가입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1개월 미만의 기간은 1개월로 한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에서 기여금을 공제하고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내지 아니 한 기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을 근로자의 가입기간으로 산입한다.
  - ③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강보험공단"이라 한다)이제90조제4항에 따라 <u>근로자에게</u> 그 사업장의 체납 사실을통지한 경우에는 제2항 단서에

제23조의2 및 제23조의3
③
<u>제21조・제23조의2</u>
제2항 및 제23조의3제2항
④ (현행과 같음) 제17조(국민연금 가입기간의 계
세17도(국원원급 기업기원의 제 산) ① (현행과 같음)
②
<u> </u>
임금이나 제23조의 <u>2</u>
제1항에 따른 예술인 또는 제2
3조의3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
<u>자의 대가</u>
·.
③
근로자,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예술인
또는 제23조의3제1항에 따른

도 불구하고 통지된 체납월(滯納月)의 다음 달부터 체납 기간은 가입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그 근로자는 제9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입기간에 산입되지 아니한 체납기간에 해당하는 기여금 및부담금을 건강보험공단에 낼수 있으며, 다음 각 호에 따른기간을 가입기간에 산입한다.

#### 1. • 2. (생략)

- ④ (생 략)
- ⑤ 건강보험공단이 사용자가 체납한 연금보험료를 사용자로부터 납부받거나 징수한 경우에는 제3항 후단에 따라 근로자가 중복하여 낸 기여금 및부담금을 해당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더하여 돌려주어야 한다.

⑥ (생략)

제19조(출산에 대한 가입기간 추 저 가 산입) ① <u>2 이상의 자녀</u>가

노무제공자에게
근로자, 제23
조의2제1항에 따른 예술인 또
는 제23조의3제1항에 따른 노
무제공자는
<u>.</u>
1.・2.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⑤
근로자,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예술인
또는 제23조의3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자가
<u>근로자, 제23조의2제</u>
1항에 따른 예술인 또는 제23
조의3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자
에게
⑥ (현행과 같음)
네19조(출산에 대한 가입기간 추
가 산입) ① 자녀

있는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때(이 조에 따라 가입기간이 추가 산입되면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을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한다. 다만, 추가로 산입하는 기간은 50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자녀 수의 인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자녀가 2명인 경우: 12개월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둘째 자녀에 대하여 인정되는
   12개월에 2자녀를 초과하는
   자녀 1명마다 18개월을 더한
   개월 수
- ②・③ (생 략)

제22조(신고인에 대한 통지 등)
① 국민연금공단은 <u>제21조</u>에
따른 신고를 받으면 그 내용을
확인하고, 신고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인정되면 그 뜻을 신
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sim$	/ -3	-3 \
(2)	(생	라
	( / X	=

100 -ll 6l
<u>100개월</u>
<u>.</u>
· 1 <u>1명</u> <u>36개월</u>
2 <u>2명</u>
<u>첫째</u>
- <u>36개월에 1자녀</u>
<u>36개월</u>
②·③ (현행과 같음)
22조(신고인에 대한 통지 등)
① <u>제21조·제</u>
23조의2제2항 또는 제23조의3
제2항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신 설>

제2장의2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 에 대한 국민연금 특례 제23조의2(예술인에 대한 특례) ① 근로자가 아니면서 「예술 인 복지법」 제2조제2호에 따 른 예술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사람 중 같은 법 제4조의 4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이하<u>"문화예술용역</u> 관련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다른 사람을 사용하지 아니하 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 는 사람(이하 "예술인"이라 한 다)으로서 18세 이상 60세 미 만인 사람과 이들을 상대방으 로 하여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 약을 체결한 사업의 사업주는 제8조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해당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의 개시일에 당연히 사업장가 입자가 된다. 다만, 제8조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 및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는 제외한 다.

②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사업의 사업주는 예술 인의 가입자 자격의 취득, 상실 및 계약 내용 등에 관한 사항 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하여 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6조에도 불구하고 18세 미만 예술인은 사업장가입자가 되는 것으로 본다. 다만, 본인이 원하지 아니하면 사업장가입자가 되지 아니할 수있다.
-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 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사업장가입자가 되지아니할 수 있다.

제23조의3(노무제공자에 대한 특례) ① 근로자가 아니면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해당 사업주 또는 노무수령자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u><신 설></u>

"노무제공계약"이라 한다)을 체 결한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이 하 "노무제공자"라 한다)으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사람과 이들을 상대방으로 하여 노무 제공계약을 체결한 사업의 사 업주 또는 노무수령자(이하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라 한 다)는 제8조제1항 본문에도 불 구하고 해당 노무제공계약의 개시일에 당연히 사업장가입자 가 된다. 다만, 제8조제1항제1 호에 해당하는 자 및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소득 기준을 충족 하지 못하는 자는 제외한다. ②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는 노무제공자의 가입자 자격의

- ②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는 노무제공자의 가입자 자격의 취득, 상실 및 계약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국민연금공단 에 신고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6조에도 불구하고 18세 미만 노무제공자는 사업장가입자가 되는 것으로 본다. 다만, 본인이 원하지 아니

제63조의2(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연금액) 제61조에 따른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면 60세 이상 65세 미만(특수직종근로자는 55세 이상60세 미만)인 기간에는 제62조제2항ㆍ제4항, 제63조 및 제66조제3항에 따른 노령연금액(부양가족연금액은 제외한다.이하이 조에서 같다)에서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뺀금액을 지급한다.이 경우 빼는금액은 노령연금액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1. 초과소득월액(노령연금 수급 권자의 소득월액에서 제51조 <u>하면 사업장가입자가 되지 아</u> 니할 수 있다.

①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 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사업장가입자가 되지아니할 수 있다.

<삭 제>

제1항제1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이 조에서 같다)이 100만원 미만인 사람: 초과소득월액의 1천분의 50

- 2. 초과소득월액이 100만원 이
   상 200만원 미만인 사람: 5만
   원 + (초과소득월액 100만
   원) × 1천분의 100
- 3. 초과소득월액이 200만원 이 상 300만원 미만인 사람: 15 만원 + (초과소득월액 200 만원) × 1천분의 150
- 4. 초과소득월액이 300만원 이 상 400만원 미만인 사람: 30 만원 + (초과소득월액 300 만원) × 1천분의 200
- 5. 초과소득월액이 400만원 이 상인 사람: 50만원 + (초과소 득월액 - 400만원) × 1천분 의 250

제90조(연금보험료의 원천공제 납부 등) ① 사용자는 사업장 가입자가 부담할 기여금을 그 에게 지급할 매달의 임금에서 공제하여 내야 한다. 이 경우

제90조(	연금보	험료의	원천공제
납부	등) ①	)	
		<b>.</b>	<u>제1</u>

제100조의3제1항에 따라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 중 일부를 지원받는 때에는 사업장가입자가 부담할 기여금에서지원받는 연금보험료 중 기여금에 지원되는 금액을 뺀 금액을 공제하여야 한다.

- ②·③ (생 략)
- ④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연 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 에는 건강보험공단이 보건복지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 로자에게 그 사업장의 체납 사 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 ⑤ (생략)

제100조의3(사업장가입자에 대한 제 연금보험료의 지원) ① (생 략)

<신 설>

<u>00</u> 조의3제1항 · 제2항
· ②·③ (현행과 같음)
4
근로
자(예술인과 노무제공자를 포
<u>함한다)에게</u>
⑤ (현행과 같음)
100조의3(사업장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의 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국가는 사업장가입자인 예
<u>술인</u> 또는 노무제공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연금보험료 중 기여
금 및 부담금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의 소득을 얻을 것

② 제1항에 따른 연금보험료의 지원수준, 지원방법 및 절차 등 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 로 정한다.

제123조(자료의 요청 및 전산망의 이용)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법인·단체의 장에게 제100조의4제1항에 따른 연금보험료 지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관·법인·단체의 장은 특별한사유가 없으면 요청받은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 ⑤ (생 략)

제13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2.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의
재산 및 「소득세법」 제4조
제1항제1호에 따른 종합소득
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일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u>.</u>
제123조(자료의 요청 및 전산망
의 이용) ①
제100조
<u>의3제1항ㆍ제2항</u>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131조(과태료) ①

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 과한다.

- 으로 신고한 사용자
- 2. (생략)
- ②·③ (생 략)

_	 	_	-	 	_	 	 _	 	_	 	_	_	 	_

- 1. <u>제21조제1항</u>을 위반하여 신 1. <u>제21조제1항·제23조의2제2</u> 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u>항 및 제23조의3제2항</u>-----
  - 2. (현행과 같음)
  - ② · ③ (현행과 같음)